혁신형 물기업 신청 관련 Q&A

(Q1) 접수 방법이 메일과 우편인데 우편으로 접수 시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 또는 원본 서류가 도착할 때 인정 가능한지?

(A1) 신청서는 이메일 수신 일시 기준 마감일 18:00까지이며, 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Q2) 구비서류 목록 중 납품 실적 증빙서류 제출 시 건당 10만원 이하 실적 등은 자료 취합 시 증빙 서류량이 너무 많아 준비가 어려우며 소액 납품 실적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A2) 납품 실적 증빙서류는 물기업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물산업 관련 제품의 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이며, 납품 실적이 소액일 경우 전체 합계표만 취합하여 제출 가능, 금액이 큰 실적은 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소액 실적의 경우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신청업체에 제출 요구

(Q3) 혁신형 물기업 8개 지원프로그램을 5년 동안 중복 및 교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예시) 해당년도에 연구시설 개선지원으로 2천만원을 지원 받은 후 다음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또다시 지원 가능한지?

(A3) 혁신형 물기업 지정 기업은 5년간 8개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차하여 지원 가능. 단, 년간 기업당 75백만원 이하이며 해당 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Q4)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해외 현지 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추진 시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A4) 혁신형 물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지정 업체에서 각 지원 분야를 수행 시 소요되는 직접경비만 해당하며,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음

(Q5) 지원금 전체 금액을 일시에 받는지?

(A5)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협의회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선금 70%를 지급해주며 과업 종료 시 30%를 최종 지급

(Q6) '[별지 제1호 서식]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 작성 내용 중 '종업원 수(명)' 기입란에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직은 어느 직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A6) 사무직과 생산직의 구분은 건강보험 검진 주기(사무직 1회/2년, 생산직 1회/년)에 따라 구분되어짐에 따라 신청회사의 업무 분장에 따라 기입

(Q7) 신청서류가 간략한데 더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A7)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간략하게 진행하며 향후 사전평가 및 지정심의 후 지정된 대상기업은 협약 체결 시 지원 프로그램 활용 사업계획서 등 세부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Q8)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예정 업체이며, 입주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가점 대상이 되는지?

(A8) 혁신형 물기업 가점 대상 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의 범위는 현재 입주하여 운영 중인 기업과 입주 계약서 보유업체로 국한함

(Q9) 표준재무제표에서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물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물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통한 매출에 대하여

포함가능한지?

예시) 수영장 위탁 운영 관리에서 발생되는 매출액, 종합환경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대기, 폐기물 등 타 환경산업 제품의 매출액

(A9) 혁신형 물기업 목적상 물산업진흥법의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따름

(Q10) 최근 2년 실적의 범위는?

(A10)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12월 31일까지 실적이어야 함

(Q11)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경상개발비란?

(A11) 연구개발 활동과 일상적인 제조활동이 섞여 수행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특정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개발비용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상의 연구개발비에 계상함

(Q12) 신청 자격요건에서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이거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이면 1년 전 실적은 5% 미만이고, 2년 전 실적이 5% 초과하면 신청이 자격이 되는지?

(A12) 최근 2년간 평균이므로 1년 전과 2년 전 실적의 평균이 5%이상이면 신청자격 대상임

(Q13)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준 중 연구개발비 3퍼센트 이상, 수출액 비율이 5퍼센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수점이하 반올림한 비율은 인정되는지?

예시) 연구개발비 비율 2.45%~2.99%, 수출액 비율 4.45~4.99% 등

(A13) 물산업진흥법 법률 13조, 시행령 14조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출액 비율(5%이상) 및 연구개발비 비율(2%이상)은 반올림하여 정수만 인정함

(Q14) 신청자격요건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산정 시 실적 발급처에 제공하는 자료는 USD($)로 표기 되어 있어 환율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A14) 해당연도의 연 평균 환율로 적용(2019년 1,186.05원/$, 2020년 1200.70원/$)

(Q15) 사업현황 설명자료 작성 중 고용현황에서 고용인원 산정 시 외국인 고용인력을 포함시켜서 작성해도 되는지?

(A15)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중 정기평가 시 고용창출 실적 기준이 있으며 고용현황에 대한 증빙 자료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로 확인하므로 내국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원에 한하여 산정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여부
1. 외 교(A-1)	×	18-2.구 직(D-10)	×
2. 공 무(A-2)	×	19.교 수(E-1)	○(임의)
3. 협 정(A-3)	×	20.회화지도(E-2)	○(임의)
4.사증면제(B-1)	×	21.연 구(E-3)	○(임의)
5.관광통과(B-2)	×	22.기술지도(E-4)	○(임의)
6.일시취재(C-1)	×	23.전문직업(E-5)	○(임의)
7.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4.예술흥행(E-6)	○(임의)
8.단기종합(C-3)	×	25.특정 활동(E-7)	○(임의)
9.단기취업(C-4)	○(임의)	25의3.비전문취업(E-9)	○(임의)
10.문화예술(D-1)	×	25의4.선원취업(E-10)	○(임의)
11.유 학 (D-2)	×	26.방문동거(F-1)	×
12.산업연수(D-3)	×	**27.거 주(F-2)**	**○(강제)**
13.일반연수(D-4)	×	28.동 반(F-3)	×
14.취 재(D-5)	×	**28의2.재외동포(F-4)**	**○(임의)**
15.종 교(D-6)	×	**28의3.영 주(F-5)**	**○(강제)**
16.주 재(D-7)	○(상호주의)	**28의4.결혼이민(F-6)**	**○(강제)**
17.기업투자(D-8)	○(상호주의)	29.기 타(G-1)	×
18.무역경영(D-9)	○(상호주의)	30.관광취업(H-1)	×
		31.방문취업(H-2)	○(임의)

(Q16)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 정기평가 시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창출 실적 등 3가지 성과평가 기준 중 1개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지원 축소 및 중단되는지**?**

(A16) 성과평과는 연1회, 종합평가는 5년/1회 수행하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